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26

발의연월일: 2020. 8. 13.

발 의 자:최인호·박상혁·박재호

강선우 · 전재수 · 김병욱

송옥주 · 이학영 · 이탄희

민홍철 · 서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무허가·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500 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과 함께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

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까지의"를 "제4항까지의"로 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
- 2.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 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	제46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은)
<u><신 설></u>	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
	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	<u>에 처한다.</u>
	<u>1.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</u>
	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
	<u>한 자</u>
	2.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
	<u>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</u>
	하고 영업을 한 자
	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	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
	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
	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
	<u>한 자</u>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<u>4</u>
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	<u><삭 제></u>
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	

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영업을 한 자
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<삭 제> 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<u>한 자</u>
- 4. (생략)
- ④ (생 략)
-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4.	(현행과	같음)
т.	\ L 0 1	

$\overline{(5)}$	(혀해	제4항과	간음)
(U)	\ 1' 0		-

<u>6</u>		 	 <u>제4</u>
<u>항끼</u>	-지의	 	